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조의2가 신설(제33808호, 2023. 10. 1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하 사유 정비·확대,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및 공람 후 종결 사유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하며,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확대

이미 동일한 사실로 고소·고발이 접수되었거나 고소인·고발인의 진

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리(안 제21조제2항 제3호, 제4호 신설)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확대

동일한 사실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공람 후 종결’할 수 있도록 사유 확대(안 제19조제2항제5호 바목부터 차목 신설)

다. 각하 사유 정비·확대

- 1) 고소인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등 수사 개시 및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처리(안 제110조제1항제4호 다목 개정)
- 2) 고소권자 아닌 자에 의한 고소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소·고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하 처리할 수 있도록 각하 사유 정비(안 제110조제1항제4호 마목, 바목 신설)
- 3) 사안의 경중,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등 고려하여 고소·고발이 수사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개시·진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각하 처리(안 제110조제1항제4호 사목 신설)

라. 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

- 1) 고소·고발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등이 수사 진행상황 설명을 희망하거나 통지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개정, 안 제11조제2항 신설)

- 2) 병존 사건에서 수사결과 통지를 각각 하지 않고 하나의 통지서로 작성하도록 근거 조항 및 서식 마련(안 제99조제4항 및 별지 제100호의2 서식, 별지 제101호의2 서식 신설)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편철함으로써 사건분리가 필요한 병존사건에서 봉인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을 이용하여 복사하기 위함(안 제44조제1항 개정)

바. 수사준칙 조문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

검사와의 협의 관련 수사준칙 인용 조문 수정(안 제7조제2항, 안 제10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사준칙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제1항”을 “제1항”으로, “않으면”을 “않는 경우로서 수사준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매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이후에는 고소인등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5호에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가 취소된 경우

제2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 중 “후,”를 “후, 그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를 “봉인하여,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로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9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7조제4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사. 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중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정종류	1. 송 치 () : 송치관서명(☎: 전화번호) 2. 이 송 () : 이송관서명(☎: 전화번호) 3. 수사중지 () 4. 불 송 치 ()		
주요내용			
담당팀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소 속 관 서 장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정종류	1. 송 치 () : 송치관서명(☎: 전화번호) 2. 이 송 () : 이송관서명(☎: 전화번호) 3. 수사중지 () 4. 불 송 치 ()		
주요내용 및 이유			
담당팀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 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은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소속 관 서 장

【별첨첨부】

【 주요내용 】

【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 】

210mm × 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생략)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헌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제1항----- ----- ----- ----- ----- 않는 경우 <u>로서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는 -----.</u>			
③·④ (생략)	③·④ (헌행과 같음)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 ----- ----- ----- ----- ----- ----- ----- ----- ----- ----- ----- ----- ----- -----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1. ~ 4. (생략)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
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3개월-----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
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
행상황 통지 이후에는 고소인등
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
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

<u><신 설></u>	<u>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u>
<u><신 설></u>	<u>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u>
<u><신 설></u>	<u>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u>
<u><신 설></u>	<u>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u>
제21조(고소·고발의 수리)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1조(고소·고발의 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u> <u>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u>

	<u>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u>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 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 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 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 2개를 제작한 <u>후</u> ,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u>지체 없이</u> <u>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u> <u>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u> <u>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u> ②·③ (생략)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 관) ① ----- ----- ----- ----- ----- ----- <u>후, 그중 하나</u> <u>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u> <u>서명을 받아 ---- 봉인하여, 봉</u> <u>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u> <u>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u> <u>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u> <u>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u> <u>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u> <u>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u> <u>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u> <u>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u> <u>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u> <u>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u> <u>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u>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② (생략)

<신설>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 ③ (생략)

<신설>

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 ③ (생략)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10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3. (생략)

4. 각하: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나. (생략)

다.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이 되어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0조제5항-----

--.

제110조(불송치 결정)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

<u>우</u> 라.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u>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u> 라. (현행과 같음) 마. <u>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u> 바. <u>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u> 사. <u>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 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